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해정보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 근거 마련〉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수집하는 위해정보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⑦ (생략) <u><신설></u>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비자안전센터는 제7항에 따른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수집하는 위해정보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현행법 제52조¹⁾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

1)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6항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위
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25-10호)에 따
라 58개 병원(응급실 기반 17개, 의무기록실 기반 41개), 56개
소방서, 3개 유관기관 등 총 117개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운
영하고 있음³⁾.

-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3) 참고자료: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2026. 5. 기준)

□ 그러나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⁴⁾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현행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⁵⁾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위해

4)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 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제출기관별 실적>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위해정보 제출기관	병원	응급실 기반	38,097	22,947	23,541
		의무기록실 기반	11,900	10,333	10,239
		질병관리청 연계병원*	-	67	2,446
	소방서 (긴급구조)		-	9	158
	한국가스안전공사		-	-	16
총계			49,997	33,356	36,400

*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업무협약(2024. 12. 18)에 따른 위해·손상정보 데이터 공유

※ 식약처, 기후부, 국표원 등 정부부처와의 MoU 체결을 통한 망연계 및 위해정보 공유

(자료: 한국소비자원)

□ 또한, 식약처·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안전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한 정보 연계·공유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연계·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위해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하는 기관인 반면,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산업부의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은 위해 원인조사, 리콜,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5

【참고자료】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2026. 5. 기준)

지역	병원	소방본부 (소방서)	유관기관
서울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12)	종로소방서 강남소방서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부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부산중부소방서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2)	대구중부소방서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광주소방안전본부 (관할 소방서 5개소)	
인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한림병원(2)	인천중부소방서	
대전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2)	대전중부소방서	
울산	의료법인해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2)	울산중부소방서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8)	경기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 36개소)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3)	춘천소방서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1)		
충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대학교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한국가스 안전공사
충남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4)	천안동남소방서	
경북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3)	구미소방서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2)	마산소방서	
전북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 유지재단예수병원(3)	전주덕진소방서	한국전기 안전공사*
전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2)	목포소방서	
제주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2)	제주소방서	
계	58개	본부 2개 (소방서 56개)	3개

*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 부속합의 체결(2025. 10.)에 따라 2026년부터 위해정보 제출
(자료: 한국소비자원)